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25. 김용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2.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8.)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12.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용태의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

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개정안 제26조에 따라 「보험업법」을 준용한 간소화 절차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등은 청구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요양기관(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공제회에 제출할 필요 없이, 요양기관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공제회의 위탁을 받은 전송대행기관이 요양기관의 서류를 발급받아 공제회에 전송하게 되므로, 급여금 청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급여금 청구 과정에는 병원 진료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전송이 수반되므로, 개정안 제27조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업법」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상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보험업법」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5년 10월 25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시점이므로 다른 유사 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법률안 심사경과에 따라 시행일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준용되는 「보험업법」의 내용을 명
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준용되는 「보험업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류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수정하고(안 제26조 전단), “이 경우”를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로 수정함(안 제26조 후단).

의결일을 기준으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이 도과하였으나, 개정안의 시행을 위하여 보험개발원과의 계약 체결, 간소화시스템 연계 구축 개발 및 테스트 등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2025년 10월 25일”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 전단 중 “서류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로 한다.

안 부칙 중 “2025년 10월 25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가입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 ----- ----- ----- ----- -----서류 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 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 템의 구축·운영-- ----- ----- ----- ----- -----. 이 경우 “실 손의료보험 계약” 은 “실손의료보험

		<u>성격의 급여계약”</u> <u>으로,</u>----- ----- ----- ----- ----- ----- ----- -----.
<u><신 설></u> <u>제26조(과태료)</u> (생	<u>제27조(벌칙) 제26조</u> <u>에 따라 준용되는</u> <u>「보험업법」 제10</u> <u>2조의7제5항을 위</u> <u>반하여 업무를 수</u> <u>행하는 과정에서</u> <u>알게 된 정보 또는</u> <u>자료를 누설하거나</u> <u>같은 법 제102조의</u> <u>6제1항에 따른 서</u> <u>류 전송 업무 외의</u> <u>용도로 사용 또는</u> <u>보관한 자는 3년</u> <u>이하의 징역 또는</u> <u>3천만원 이하의 벌</u> <u>금에 처한다.</u> <u>제28조(과태료)</u> (현행	<u>제27조(벌칙) (개정안</u> <u>과 같음)</u> <u>제28조(과태료) (개정</u>

략)	제26조와 같음) 부칙 이 법은 <u>2025년 10월</u> <u>25일</u> 부터 시행한다.	안과 같음) 부칙 --- <u>공포 후 6개월이</u> <u>경과한 날</u> -----.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 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u> <u>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u> <u>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u> <u>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u> <u>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u> <u>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u> <u>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u> <u>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u> <u>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u> <u>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u> <u>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u> <u>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u> <u>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u> <u>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u> <u>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u> <u>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u> <u>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u> <u>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u> <u>사”는 “공제회”로 본다.</u>
<u><신 설></u>	<u>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u> <u>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u> <u>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u> <u>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u>

<u>제26조</u> (과태료) (생략)	<u>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28조</u> (과태료) (현행 제26조와 같음)
------------------------	--